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127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1. D

2. E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6,895,245원 및 그 중 3,555,770원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227,574원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3%의, 258,772원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14%의, 653,500원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23%의,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0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2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인 피고 D는 아들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사택입주를 위한 무주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인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사택퇴거 후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보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가 2021. 2. 28. 아들인 피고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그런데, 피고 E는 201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가 이에 관하여 2015. 6. 8.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의 배우자 F은 2015. 8. 2.부터 2018. 5. 13.까지 사택에 입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피고 E가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공공요금 등은 피고 E가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E가 피고 D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사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부 동 산 의 표 시

1. 강원도 삼척시

대60평방미터

2. 강원도 삼척시

[도로명주소]

강원도 삼척시

위 지 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42.30평방미터

- 관할: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소유자: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03. 02. 소외 (주) G [] 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소외 (주) G [] 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분할 전 소외 (주) G [] 은 2001. 11. 01. 소외 (주) H [] 과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2003. 10. 01. 소외 I [] (주)를 흡수합병한 법인입니다.

2. 피고 1. D [] 와 피고 2. E [] 와의 관계

피고 2. E [] 는 피고 1. D [] 의 별자등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입니다.

3. 피고 1. D [] 에 대한 원고의 채권액

가) 신용카드거래약정의 주요내용

가. 피고 1. D [] 는 원고 및 원고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거래(물품 및 용역의 일시불구입, 할부구입, 현금서비스이용 등)를 하고 원고와 계약채결시 기재한 결제 은행의 예금계좌로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며, 가맹점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과 거래하고 그 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소위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 1. D [] 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매월 대금결제일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약정은 해지되고 채무액에 대하여 이를 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 이율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구 분	카드번호	신 규 일	결제일	비 고
J 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2011.11.16.	27.	

다. 연체료를

구분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일시불, 할부	21.9%	22.3%	22.7%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	-	-	-
-금리 18%미만	21.9%	22.3%	22.7%
-금리 18%이상 ~ 23%미만	23.1%	23.3%	23.5%
-금리 23%이상	23.6%	23.8%	24.0%

구분	요율등급	수수료율	연체기간	적용연체료율
할부	2	13.80%	3개월미만	22.3%
RLS	2	21.40%	3개월미만	23.3%

라. 리볼빙결제 (RLS, RCA)에 대한 약정내용

① 리볼빙결제란 카드 이용대금 중 회원이 지정한 회망결제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하 "회망결제금액"이라 함) 또는 원고가 정하는 최소결제금액(이하 "최소결제금액"이라 함)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차기 결제일로 이월되고,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단, 이월된 금액에는 리볼빙결제 수수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② 리볼빙결제를 신청한 경우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포함)의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리볼빙결제가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대출거래약정내용

피고 1. D는 원고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바, 본건 대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지론(에이알에스, 인터넷대출, 자동화기기 등)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이율로 지급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본 약정은 해지되고 위 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

하거나 대출금의 여신기간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피고1. D는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자율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 약관 제3조[이자율과 지연배상금]에 의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래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 출 금 액	대 출 일 자	대출만기일	비 고
카드이자론 []	금3,700,000원	2018.02.23.	2021.05.22.	-
카드이자론 []	금3,200,000원	2018.08.06.	2021.09.22.	-
카드이자론 []	금2,000,000원	2021.03.28.	2022.04.27.	-

5. 피고1. D에 대한 신청인의 채권액

원고는 피고1. D에 대하여 2021. 05. 28. 현재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음				(단위 : 원)	
구 분 카드번호, 계좌번호	연체원금 (미청구원금)	연체수수료(약정이자)	연체료 (연체이자)	수수료 (통도상한 수수료,연회비/ SMS)	합 계	비고	
J 카드	할부 미청구	2,370,000	0	0	1,053	2,371,053	22.3%
	할부	1,185,770	88,237	16,217	0	1,290,224	
	소 계	3,555,770	88,237	16,217	1,053	3,661,277	
	RLS 미청구	93,450	0	0	21	93,471	23.3%
	RLS	134,124	1,671	1,812	0	137,607	
	소 계	227,574	1,671	1,812	21	231,078	
카드이자론 []	258,772	5,557	427	0	264,756	20.14%	
카드이자론 []	653,500	17,882	3,066	0	674,448	20.23%	
카드이자론 []	2,000,000	63,586	100	0	2,063,686	22.05%	
전 체 합 계	6,695,616	176,933	21,622	1,074	6,895,245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02.23.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01.16.선고 2010다438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1, D는 원고와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카드이지론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와 중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02.28.사해행위가 있는 후 한 달 만에 바로 추가로 관련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대출금 2,000,000원이 카드이지론 대출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은 물론 3건의 카드이지론 모두 신청인의 채권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